

계룡 시민대상 조례(안)

의안번호	제 228호
의결년월일	2005. 9. . (제 18 회)

제출일자	2005. 8. .
제출자	계 룡 시 장

1. 제정이유

- 「충청남도계룡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」(법률 6929호, 2003. 7. 18)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2003. 9. 19 계룡시청이 개청함.
-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시민의 귀감이 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한 시민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자긍심 제고와 애향심 고취를 위함

2. 주요내용

- 수상대상자를 관내에 3년이상 거주 및 주민등록이 된 자. (제2조)
- 수상부문을 지역사회산업개발부문, 교육·문화·체육·충효·봉사 부문, 민군협력부문으로 구분하여 시상함 (제3조)
- 수상자 심의 및 결정을 위해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함(제4조)
- 수상자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함 (제6조)
- 시상은 격년제로 하되, 짝수해 시민의 날에 함 (제8조)

3. 입법예고 결과

- 입법예고기간 : 2005. 6. 20 ~ 7. 9(20일간)
- 의견 제출 사항 : 없 음

4. 참고자료

- 타 시군 시민대상 조례 제정현황

계룡 시민대상 조례(안)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계룡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계룡 시민대상(이하 “시민대상”이라 한다)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수상대상) 시민대상은 추천 당시 계룡시에서 계속 3년이상 거주 및 주민등록이 된 사람으로서 시민의 귀감이 되고 우수한 연구와 창작 및 의욕적인 활동을 통하여 수상 부문에 그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한다. 다만, 제3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민군협력 부문은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.

제3조 (수상부문 등) ① 시민대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지역사회산업개발 부문
2. 교육·문화·체육·충효·봉사 부문
3. 민군협력 부문

② 제1항의 시민대상은 각 부문마다 1인을 시상하되,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자 선정결과 해당자 없는 부문은 이를 시상하지 아니한다.

제4조 (위원회 구성) ① 시민대상 수상자를 심의·결정하기 위하여 계룡시 시민대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회 위원은 덕망이 있으며,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부문별 전문지식이 있는 인사 중에서 시장이 각각 위촉한다.

④ 위원의 위촉은 위원회가 필요할 때 위촉하고, 당해년도 시상과 동시에 해촉된다.

제5조 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회무를 통할하며,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 (회의)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수상자 결정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.

제7조 (수상후보자 추천) 수상후보자는 실·과·직속기관·면·동장, 각급 기관장 또는 20세 이상 시민 30인 이상의 서명으로 추천한다.

제8조 (시상) ①시민대상 시상은 격년제로 하되, 짝수해 시민의 날에 시상한다.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.

②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한다.

제9조 (간사 및 서기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.

②간사와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
제10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타 시 · 군 시민대상 조례 제정 현황

시 · 군 명	상 명	수상부문	위원회구성	수상자 결 정	시상시기 및 부상	비 고
충청남도	문화상	① 학술 ② 예술 ③ 문학 ④ 교육 ⑤ 지역사회개발 ⑥ 체육	15인 이내 (위원장:호선)	재적위원2/3 이상 출석 출석위원중 2/3이상 찬성	· 매년 · 상장및부상 (예산범위)	
천안시	시민의상	① 교육학술 ② 문화예술 ③ 체육진흥 ④ 사회진흥 ⑤ 의료봉사 ⑥ 지역개발 ⑦ 농림개발 ⑧ 가정윤리	41인 이내 (위원장:부시장) ※부위원장 8명(부문별위원 장)	재적위원2/3 이상 출석 출석위원중 2/3이상 찬성	· 매년 · 상패및부상 (예산범위)	
공주시	웅진 문화상	① 지역사회개발 ② 교육문화 ③ 체육청소년 ④ 효행 ⑤ 특별상	25인 이내 (위원장:시장)	재적위원2/3 이상 출석 출석위원중 2/3이상 찬성	· 격년제 (작수해,시민의날) · 상패및부상 (예산범위)	
보령시	만세보령 대 상	① 교육문화 ② 지역개발 ③ 체육진흥 ④ 사회봉사 ⑤ 효·열행	15인 이내 (위원장:호선)	재적위원2/3 이상 출석 출석위원중 2/3이상 찬성	· 매년 (시민의날) · 상 패 및 부 상 (예산범위)	
아산시	시민대상	① 효행 ② 교육문화 ③ 사회봉사 ④ 지역개발 ⑤ 체육	26인 이내 (위원장:호선) ※부위원장 8명(부문별위원 장)	재적위원2/3 이상 출석 출석위원중 2/3이상 찬성	· 매년 (시민의날) · 상 패 및 부 상 (순금10돈)	

시·군 명	상 명	수상부문	위원회구성	수상자 결 정	시상시기 및 부상	비 고
서산시	시민대상	① 교육문화 및체육진흥 ② 사회봉사 ③ 산업 및 지역개발 ④ 효행및선행	21인이내 (위원장:부시장)	재적 과반수 출석 과반수	· 매년 (시민의날) · 상패및부상 (예산범위)	
논산시	시민대상	① 지역개발 ② 사회윤리 ③ 문화체육 ④ 교육 ⑤ 농업진흥	10인이내 (위원장:시장)	재적위원2/3 이상 찬성	· 격년제 · 상장및부상 (예산범위)	
금산군	군민대상	① 교육문화 및 체육진흥 ② 산업진흥 ③ 사회봉사	15인 이상 20인 이하 (위원장:군수)	재적위원2/3 이상 출석 출석위원중 2/3이상 찬성 (무기명투표)	· 매년 (금산인삼축제) · 상패및부상 (예산범위)	
연기군	군민대상	① 교육 ② 문화 및 체육진흥 ③ 지역개발 ④ 농업부문 ⑤ 사회봉사 및 효행 ⑥ 특별상	20인 이내 (위원장:군수)	재적위원 과반수 출석, 출석 과반수 찬성	· 매년 (도원문화제) · 상패및부상 (금메달40돈)	
부여군	군민대상	① 지역사회개발 ② 사회윤리 ③ 문화예술체육 ④ 애향봉사	37인 이내 (위원장:군수) 군의회의원 :당연직	재적위원 과반수출석, 출석 2/3이상 찬성	· 격년제 · 상패및부상 (예산범위 :순금메달)	
서천군	새서천대상	① 교육·문화체 육 ② 지역개발 ③ 사회봉사 및 효행	20인이내 (위원장:군수)	재적위원 과반수 출석, 출석 과반수 찬성	· 매년 (군민의날) · 상패및부상 또는 상금 (예산범위)	규칙 제정

시·군 명	상 명	수상부문	위원회구성	수상자 결 정	시상시기 및 부상	비 고
청양군	군민대상	① 교육·문화 예술·체육 ② 사회봉사 ③ 산업지역개발 ④ 농림 ⑤ 효행선행 ⑥ 애향	20인이내 (위원장:호선)	재적위원2/3 이상 출석 출석위원중 2/3이상 찬성	· 매년 (군민의날) · 상장및부상 (예산범위)	
홍성군	홍주문화 대 상	① 문화·교육 ② 체육진흥 ③ 사회봉사 ④ 지역개발 ⑤ 농·어업 진 흥 ⑥ 충·효·열	15인이내 (위원장:군수)	재적위원2/3 이상 출석 출석위원중 2/3이상 찬성	· 매년 (군민의날) · 상장및부상 (예산범위)	
예산군	군민의상	① 교육·문화 ② 사회봉사 ③ 농업 ④ 효행 및 의좋은 형제	16인이내 (위원장:호선)	재적위원2/3 이상 출석 출석위원중 2/3이상 찬성	· 상패및부상 (예산범위)	
태안군	군민대상	① 사회봉사·효 행 ② 지역개발 농어민 ③ 교육·문화· 체육	15인이상 20인이내 (위원장:군수)	재적위원2/3 이상 출석 출석위원중 2/3이상 찬성	· 매년 · 상장및부상 (예산범위)	
당진군	군민대상	① 지역사회개발 ② 향토문화선양 ③ 사회윤리 ④ 사회봉사	20인이내 (위원장:군수)	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중 2/3이상 찬성	· 매년 · 상패및부상 (순금150g상당)	